

# 철사줄에 동여매인 소화기

사망 2명·12억원 피해·750평 전소



## 1. 일반사항

- 건 물 명 : 중앙도매상가
- 소 재 지 : 대전시 동구 원동38-1
- 발 화 시 간 : 1983. 12. 18. 19:05
- 화 재 신 고 : 19:15
- 소방대출동 : 19:19
- 진 화 완 료 : 20:40
- 발 화 지 점 : 1층점포
- 화 재 원 인 : 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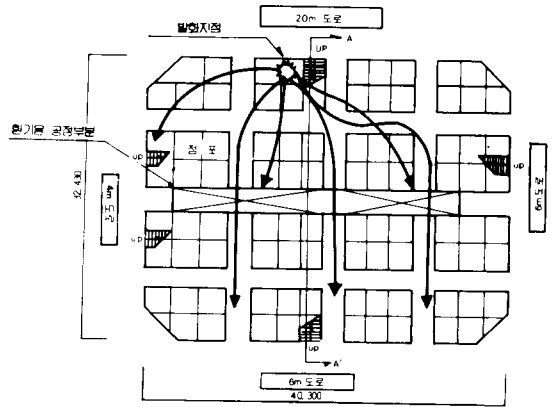
## 2. 건물개요

이 시장건물은 1965년에 준공된 철근콘크리트구조의 2층 건물로서 연면적은 2,480m<sup>2</sup>이다. 지붕은 슬라브이나 중앙에 슬레이트구조의 환기용 공정(空井)이 있어 화재시 굴뚝 역할을 하여 2층으로의 주 연소경로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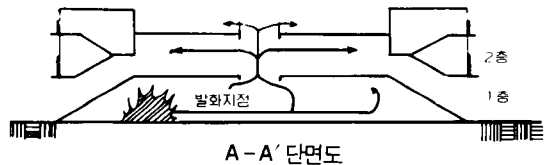
건물의 층별현황은 다음과 같다.

층 별	면적(m <sup>2</sup> )	용 도	점포수	내 장 재
1	1,202.5	의류시장	91	시멘트·몰탈
2	1,202.5	의류시장·양복점	46	〃
PH	75	창고·사무실	-	〃
계	2,480	-	137	-

이 시장은 소방서까지의 거리가 약 2km로 신속한 소방대의 출동이 가능한 위치에 있었으며 건물주위에는 소화활동에 필요한 공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발화장소인 1층평면도 및 연소경로



A-A' 단면도



### 3. 화재상황

화재는 1층 대창상회에서 발생되었으며 화재원인은 누전이나 연탄불 과열로 추정되고 있다.

최초 목격자인 1층 모녀상회 주인에 의하면 1층 대창상회에서 연기가 나 달려가 보니 전기배선에서 불덩이가 떨어져 진압된 의류에 불이 붙는 것을 보고 소화기를 찾았으나 철사줄로 동여매어 있어 사용하지 못하고 화재가 난 것을 주위에 알렸으며 다른 상인이 소방서로 화재신고를 하였다.

화재당시 이시장에는 연말 대목으로 점포마다 화학섬유 등의 의류를 가득 쌓아 놓아 불이 급속히 확산되는 바람에 자체 소화작업이 불가능하였고, 불길은 때마침 불어오는 1.2m/초의 서풍을 타고 1층 전체로 확대되었으며, 방화구획 상태가 불량한 건물양쪽의 주계단과 중앙의 환기용 공정(30m×2.4m)을 통하여 2층으로 연소되었다.

불이 나자 건물내부에 있던 상인과 고객들은 옥내·외 계단을 통하여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으나 2층 신라양복점 주인등 2명은 상품을 챙기다 뒤늦게 비상계단쪽으로 피신 하었으나 셔터로 잠겨져 있어 다시 복도쪽으로 나오다가 유독가스에 질식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 4. 소방대의 진화활동

소방대가 화재현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불길이 1층 전체에 휩싸여 있었다. 화재가 강렬하며 건물에 접근이 어려워 건물 외부에서부터 진화작업을 하는 한편 인접 건물로의 연소방지에 주력하였다.

화재는 시장을 거의 전소시키고 발화후 1시간35분이 지난 20시40분에야 완전히 진화되었다.

이 화재에는 33대의 소방차와 330명의 소방관, 경찰관등이 동원되었다.

### 5. 피해상황

- 인명피해 : 사망 2명, 부상 1명
- 재산피해 : 약12억원(2,480m<sup>2</sup> 전소)

## 6. 소방시설의 설치 및 이용상황

### 가. 경보설비

건물 전체에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안전점검 결과에 의하면 각종 시험, 비상전원 등이 불량하고 모든 시설이 너무나 노후되어 보수및 교체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재시에도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

### 나. 소화설비

화재시 14대의 소화기가 2층 계단 주위에 집중 보관되어 있었으나 철사로 동여 매어 놓았고 집중 비치되어 있으므로 사용되지 못했다.

또한 2개의 옥외소화전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설치되어 있었으나 소화전의 조작방법 미숙등으로 전혀 활용되지 못하였다.

### 다. 연소방지시설

연면적 1,000m<sup>2</sup>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하여야 함에도 주계단 2개소, 건물중앙의 환기용 공정으로 인하여 방화구획이 불량하였으며 특히 가운데 공정은 화재확대의 주원인이 되었다.

이 건물은 주요 구조부가 철근콘크리트의 내화구조이고 내장재는 없었으나 의류시장으로 화재하중(荷重)은 매우 높았다.

## 7. 문제점 및 대책

### 가. 화재의 조기발견 및 초기소화 실패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시설 불량으로 인하여 화재를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였다. 소화기는 철사로 묶어 한곳에 집중 배치됨으로써 사용이 불가능하였고 소화전은 사용방법을 몰라 무용지물이 되었다.

건물내의 소방시설은 화재시 사용가능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건물의 관계자에게 사용방법등을 알려주어 신속한 소화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나. 방화구획 불량

이 건물은 5개의 계단이 건물 외부에서 직접 2층으로 통해 있었으나 주계단 2개소와 중앙 환기용 공정부분의 방화구획 불량으로 시장이 전소되었다. 만약 규정대로 방화구획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피해면적을 1,000m<sup>2</sup> 이내로 감소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 다. 비상계단 폐쇄

시장등 다수인이 출입하는 건물에서는 피난통로를 함께 확보하여 화재시 건물 내에 있는 인원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도난방지를 목적으로 비상계단의 셔터를 닫아놓아 (18시경) 뒤늦게 대피한 상인 2명이 질식 사망하였다.